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잠정조치 유형에 ‘관련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추가〉
■ 김석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01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석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8.
3. 회 부 일 :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위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 9조제1항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유형에 “관련 상담소에의 상담위탁”을 추가하고 최대 1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제7항 및 제8항).

현행	개정안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만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u>관련 상담소에의 상담위탁</u>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u>제4호</u> 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	⑦ ----- ----- ----- <u>제4호 및 제5호</u> ----- -----.

현행	개정안
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u><신 설></u>	----- ----- ----- ----- ----- -----. ⑧ 제1항제5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상담소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9조¹⁾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로서,

- 그 유형으로는 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②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 등(이하 “피해자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있음.

□ 한편, 현행법 제19조²⁾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1)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2024. 1. 12.시행예정]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2)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2.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하나로서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성행교정을 통해 스톱킹범죄의 재발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임.

- 그러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스톱킹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약식명령 고지 포함)된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스톱킹행위자의 상담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³⁾되고 있음.
- 특히 스톱킹행위는 집착적 성향이 강한 것이 특징이므로 초범이나 경미한 스톱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접근 제한과 형사처벌로는 근본적 원인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병행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⁴⁾.
- 이에 개정안은 잠정조치 유형으로 “관련 상담소와의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유죄판결 선고 전에도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유경선·김나영, 「스토킹 치료, 판결까지 기다리면 늦는다…“입건 단계부터 상담치료 병행을”」, 경향신문, 2022. 9. 20.

4) 이밖음, 「서울시, 스톱커 상담치료로 스톱킹 추가 범죄 막는다」, 뉴시스1, 2022. 4. 20.
김재산, 「스토킹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 국민일보, 2022. 12. 23.

□ 스토킹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차단하는데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도 스토킹행
위자의 성행교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 실제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북·제주 등 6개 시도경찰청은
스토킹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치료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바 있는데, 일부 스토킹행위자의 경우 상담을 통해 본인의
행동이 스토킹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스토킹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고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스토킹행위자의 심리적
불안 정도, 정신질환 징후 등을 포착해 정신의학적인 치료로 연계
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⁵⁾.

○ 이러한 효과성에서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을 강제할 규정이 없어 재발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행위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담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바,

○ 잠정조치 유형에 “관련 상담소와의 상담위탁”을 추가하는 경우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교화 강화를 통해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

5) 박소영·박상연, 「경찰, 스토킹 가해자 상담치료 해보니…84명 치료 동의」, 서울신문, 2022. 10. 2.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새롭게 추가되는 “관련 상담소에의 상담위탁”의 기간을 최대 1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바, 잠정조치와 유사한 제도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⁶⁾」(이하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⁷⁾」(이하 “「아동학대

6)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 ④ (생략)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생략)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⑫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7)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 ③ (생략)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처벌법」”)에서의 임시조치의 경우 그 유형으로서 각각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위탁”을 규정하면서 그 기간을 각각 최대 2개월(기본 1개월), 최대 4개월(기본 2개월)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은 판사 또는 검사에 대한 상담소의 장 등의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경찰청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통해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적절한 치료적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70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